

제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9월 16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20 - 72
-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8월19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9월 9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마.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바. 의견 청취, 공청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사.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아. 조사연구 의뢰,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7. 22. ~ 8. 11.)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가능발전’ 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분야**(조례안 제2조제4호 관련) : 붙임1 참고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행계획은 2년마다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고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하는 사항들에 관해 정해놓고 있는데, 제2항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나오는 “구정 발전”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의미보다는 구정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 지는 바, 해당 조항의 전체 문맥상 기능으로 볼 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14조**(분과위원회)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15조**(의견청취), **제16조**(공청회 등)에서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으로 보이나, 두 조항 내 의견청취 관련 내용이 중복되고,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내용은 **안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조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제15조(의견청취)에 관한 조항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7조(경비의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8조(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음
 -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만이 가능하나, 현재 제정된 서울특별시 및 서울 각 자치구(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는 대부분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게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본 조례에서도 위원의 임기 조항을 추가하여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에서 제21조(국내외 협력 등)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홍보·교육하며 관련 기업·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 의견

-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의제 21’로 지속가능발전이 채택된 이후,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속 가능 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8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어 가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핵심인 만큼, 자질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업무에 최우선순위로 두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분과위원회 남발이나 외부위원 수당 주기식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 추진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그 정책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안 제2조제4호 관련)

– 약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 종식: 모든 곳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굶주림 종결: 굶주림을 없애고, 식량 안보를 성취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웰빙 장려
4. 질적인 교육: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 기회 장려
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든 사람들에게 물, 위생의 이용 가능성,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7. 깨끗한 에너지: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8.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생산적 고용 촉진
9. 산업, 혁신, 인프라: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혁신 육성, 재생가능한 인프라 건설
10. 불평등 감소: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도시와 주거지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만들기
13. 기후 행동: 기후 변화와 그 효과에 대응하는 긴급한 행동 취하기
14. 수중 생물: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
15. 육지 생물: 육지 생태계를 보호,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사용을 촉진, 사막화 대응, 토양 오염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저지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정의에의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출처: 시사상식사전(저자: pmg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지식백과 중

□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운영을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참석 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